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리스크 안내



중대재해처벌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 등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
* '22.1.27.시행 (50인 미만 사업장은 '24.1.27.시행,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

[기업의 주요 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 제9조 등
- 재해예방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 정부·지자체의 개선, 시정사항 이행

중대재해란?

- 중대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제2조)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 1인 이상 또는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인 재해 등을 의미 (ex :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 등)
- 중대시민재해 :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등 이용자 중 사망자 1인 이상 또는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인 재해 등을 의미 (ex. 세월호 참사 등)

위반 시 처벌은?

대상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사망*) 징역 1년 이상과 벌금 10억 원 이하 병행 부과 (부상, 질병**) 7년 이하 징역형 또는 벌금 1억 원 이하	
	5년 이내 재 발생 시 50% 가중처벌	가중처벌 없음
	안전보건교육 미 이수 : 과태료 5천만 원	교육 및 과태료 없음
법인 또는 기관	벌금	(사망) 50억 원 이하 벌금 (부상, 질병) 10억 원 이하 벌금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중대재해 발생 시, 손해액의 최대 5배 배상책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 공제 상품안내



* 자세한 보장내용 및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약관을 참고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약칭

<p>가입 대상</p>	<p>법인/기관, 해당 법인/기관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하는 자 **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통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장</p>
<p>주요 보장 내용</p>	<p>“『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벌금과 과태료는 담보하지 않습니다.”</p>
<p>1. 법률상 배상책임 (보통약관)</p>	<p>중대재해 관련 피해자에게 부담한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p>
<p>2.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특약)</p>	<p>『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보상</p>
<p>3. 형사 방어비용 (특약)</p>	<p>피보험자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소, 고발, 진정, 인지, 내사 또는 입건 등에 의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됨으로써 발생하는 형사방어비용</p>
<p>4. 공중교통수단 보장 확대 (특약)</p>	<p>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p>
<p>5. 위기관리비용 보장 확대 (특약)</p>	<p>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이 공표되고, 해당 위기에 대해 관리 및 손해를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부담한 비용</p>
<p>6. 오염손해 보장 확대 (특약)</p>	<p>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p>
<p>7. 배상책임 보장 제외 (특약)</p>	<p>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지 않습니다.</p>
<p>8. 담보범위 설정 가능</p>	<p>“중대 산업 재해”만을 또는 “중대 시민 재해”만을 담보 가능</p>

※ 가입 시 유의사항

1.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 보험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3.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예금자보호제도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이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